

특약 개정 대비표

- 1. 약관명: 『달달 하나 적금』 특약
- 2. 변경 시행일 : 2025년 7월 1일
- 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 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- 4. 주요 변경 내용 : 급여인정 기준 확대

<신규 조문 대비표>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제 9 조 우대금리 ①<생략> (주1) 급여입금 인정기준 : <u>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급여성 적요를 포함 입금되거나, 사전 지정한 급여일 전후 1영업일내에 입금되는 자금 (급여성 적요: 급여, 월급, 봉급, 연봉, 급료, 상여, 성과, 보너스, 월보수, SALARY, PAY, BONUS 등)</u> <부칙> 1. <생략> 2. <u><신설></u>	제 9 조 우대금리 ①<좌동> (주1) 급여 인정 기준 <u>(1)급여를 의미하는 문구가 포함된 적요*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</u> <u>(ex. *급여, 월급, 봉급, 연봉, 상여, 성과, 보너스, SALARY, PAY 등/ 등록직장명)</u> <u>(2) 회사에 의한 '급여코드'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</u> <u>(3) 손님이 '급여일'을 지정(등록)하고, 해당일 포함 전후 1영업일 사이에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된 경우</u> <u>※ 본인거래 및 비급여성(카드대금, 보험료 등) 거래, 자동화기기 입금분, 가지급 등 비급여성 적요는 제외</u> <u>※ 직장명 또는 급여일 등록 이후 입금 건부터 적용</u> <부칙> 1. <좌동> 2. <u>이 특약은 2025년 07월01일부터 기가입 계좌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.</u>	급여인정 기준 확대 부칙추가